

제395회 국회
(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5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2년4월25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4)
4.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7)
5.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
6.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김기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3)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2)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4)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2)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

상정된 안건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 1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 1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4) 1
4.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7) 2
5.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 2
6.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김기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3) 2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2) 2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4) 2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2) 2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 2

(21시26분 개의)

행발언 좀 할게요.

○소위원장 박주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이것 상정해 놓고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그러시지요.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0항……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

(의안번호 2115284)

4.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977)

5.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

6.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김기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3)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2)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4)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2)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

○소위원장 박주민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0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오늘도 많은 언론에서 사실은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형사사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는 데 있어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굉장히 큼니다.

특히 많은 학자나 법조계에서는 이 중차대한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공청회 등을 열어서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소위 검수완박법이 지난주부터 논의될 때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형사사법 체제의 근간을 바꾸고 또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검찰의 수사범위나 또 수사권을 조정하는 이러한 제도는 반드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누누이 건의를 드렸고 그 당시 소위원장으로 있는 박주민 위원장에게 반복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대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러한 절차가 없이 오늘 결국 중재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 또 한 사람의 국

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 국회가 과연 이런 식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절차를 통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 법안의 중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결국 한쪽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또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불가피하게 법안1소위 회의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제 신상 문제 때문에 3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3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신상?

○소위원장 박주민 아니, 지금 기자들 사이에 제가 오늘 술을 먹고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해서, 술을 무슨 어제부터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잠깐 나가서 기자들한테 아니라고 말하고 들어오겠습니다.

3분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21시29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주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했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안건조정요구서가 법사위원회에 제출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4월 22일 날 양 교섭단체 모두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수용하고 양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에 합의함에 따라서 오늘 김진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안건조정요구서 제출을 철회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 안건들을 다시 심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2일 양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을 반영한 조정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과도 사전에 된 이야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편의상 이것을 조정의견이라고 부르도록 하겠

습니다. 조정의견은 사전에 소위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되었고요 의석에도 나눠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합의문의 내용은 양 교섭단체 의원총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양 교섭단체 의원총회에서 의결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전에 대한 그동안의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 경과와 합의문을 반영한 조정의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출석하신 기관장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이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그동안의 심사 경과 그리고 조정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그동안의 심사 경과는 위원장님께서 간략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위 심사자료에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말씀하고요,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이 별지와 또 대체토론 요지 등은 소위 심사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의견이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정의견 설명자료가 있고요, 이 조정의견을 조문에 반영한 또 부대의견에 반영한 대비표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2일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관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문의 내용을 반영해서 그 합의문의 취지를 반영하되 저희가 특히 중점을 뒀던 부분은 피의자의 인권, 특히 별건수사 등으로 인해서 침해될 수 있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함께 또 그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구도 함께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설명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조정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순전히 저희 판단에 따라서 부대의견 그다음에 조문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분을 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조문별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쪽에 합의문 제1항과 2항, 5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시기가 2항과 5항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약간은…… 하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 반면 또 5항을 보면 중수청 즉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조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찰청법 개정안 부대의견을 마련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러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쪽입니다.

합의문 제1항은 ‘검찰의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이 합의문의 내용을 반영해서 크게 세 가지의 조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조문대비표의 4조 2항을 보시면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 제1항제1호 단서에 규정돼 있는 것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입니다.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고, 그 경우에 직접 수사 직무를 수행한 검사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칙에 적용례를 뒤서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했구요.

부칙 제3조는, 뒤의 페이지 3쪽을 보시면 4조 제2항에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규정이 신설되다 보니까, 현행 공수처법과 특별검사법에 보면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괄호 안에 제외되는 규정이 있는데 신설되는 조항이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할 안하게 되면 공수처검사와 특별검사의 경우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공수처법 그다음에 특별검사법에서 지금 신설되는 4조 2항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그런 조정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있습니다. 이게 의결이 됐고 공포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6조 6항에도 똑같이 검찰청법 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만약 4조 2항 신설되는 부분을 채택하신다면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조정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쪽으로 넘어가서요, 합의문 제2항입니다.

같은 조문인데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중 직접수사권을 규정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이게 합의문 내용입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그 4개 범죄는 제외하고, 그렇다 보니까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남게 된다는 그런 조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 5쪽입니다.

합의문 제3항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조문화하지 않고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이유는 각주를 보시면 현행 검찰청법 24조에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하는 부의 설치 근거만 돼 있고, 이게 현행 법령체계상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게 직제입니다—여기서 구체적인 사무 분장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쪽입니다.

합의문 제4항입니다.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별건 수사 금지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그 앞의 첫째 문장입니다.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이것은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도 공히 적용되는 별건 수사 금지를

규정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장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게 송치 사건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송치 사건에 관한 부분으로 나뉘어 봤습니다.

먼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일반적인 별건 수사 금지 규정은, 저희가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4조에 이것을 규정하게 되면, 지금 합의문의 취지가 검찰이나 사법경찰관 공히 적용되는 별건 수사 금지 규정인데 검찰청법 4조에만 규정을 하게 되면 합의문의 당초 취지가 좀 퇴색될 수 있다고 봐서,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 준수사항이 검사와 사경에 공히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4항에 넣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한 때—개시하는 경우입니다—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는 것은 지금 현행 형소법 197조의4(수사의 경합)이나 재구속의 제한 또 영장에 의한 체포 제한 그다음에 구속의 제한 또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등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는 법문입니다,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는 것이. 다른 법문을 여기에 넣었을 경우에는 해석상 여러 가지 또 기존에 있는 동일한 범죄사실과 오해의 여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는 법문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송치 사건 관련해서 합의문에서는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송치 사건은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도 형사소송법 245조의5, 그러니까 불송치되는 경우 아니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사법경찰관이 검사한테 송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송치 사건의 전형적인 경우인데 그 경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98조의2, 검사가 사경이 체포·구속한 장소를 감찰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경우 송치하도록 명할 수가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치 사건의 범위를 모두 포괄하는 조문으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쪽으로 넘어가서 합의문 제4항입니다.

현행 보시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해서 245조의7 1항 보시면 ‘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5조의6을 보면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문에 고소인으로 특정하셨습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합의문에 특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합의문의 정신을 반영해서 고소인으로 특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되, 다만 여기에 약간의 의견을 저희가 넣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피해자가 여럿이 있을 때 고소를 한 피해자가 있고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길은 좀 막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쪽으로 넘어가서요, 합의문 제5항입니다.

이게 제일 긴 합의문인데요. 먼저 대전제로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론으로서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1년 이내에 발족시키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또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사법개혁특위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일단은 사법개혁특위의 활동 범위와 활동 기한은 사법개혁특위 구성결의안에 반영될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의 발족 시기 관련해서는 그 특위에서 논의될 전담 수사기구에 관한 법이 제정될 수도 있고 기존 법이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위의 판단인데, 해당 법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될 때 그 부칙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여기서도 ‘일정 수준에 이르러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이 내용은 앞에 1쪽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쪽입니다.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 이게 합의문 제6항인데 기존에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들어가 있던 것이 공수처,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지금 현행 공수처법 25조 1항에 보면 수사처 검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대검찰청에, 대검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처 검찰에 대한 수사권은 지금 현행법으로 있는 상태인데 이 합의문에 따라서 수사관이나 행정 직원들이 범한 범죄도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0쪽에 특히 8항 관련해서요. 시행일을 시행 시까지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검찰청법 개정안 조정의견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정의견에 각각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뒤에는 합의문이 지금 첨부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님 보고 이후에 각 기관장의 의견을 순서대로 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위원 내용이 많은데 일괄해서 들으면 충분하게 얘기가 안 되니까 일단 전문위원이 한 합의문 1항에 대해서,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2항에 대해서 또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일괄해서 다 설명하면 듣는 우리 위원들도 충분하게 집중이 안 되니까, 지금 사실은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주 했지만 하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되고 요점도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주민 어떠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는 많이 걸릴까 봐 그런 건데.

그러면 합의문 1항에 대한 조정의견 관련된 의견을 먼저 각 기관별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법원행정처 차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지금 저희 회의실 내에 대검 기조부장

님이 출석해 계시지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거나 하실 때 대검 기조부장한테도 질문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4조 2항과 같이 규정을 하면 이것을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그 공판절차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저희는 좀 걱정이거든요.

○**소위원장 박주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 절차가 다 무효가 되어서 다시 진행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수사의 직무를 수행한 검사는, 그러니까 수사의 주임검사라면 다 알 텐데 그게 아니고 수사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일부 도와준 검사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공판에 관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참 굉장히 우리나라 법에서 생소한 규정이라 고민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 정도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소위원장 박주민**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차관 강성국** 수사 기능을 국가의 어느 기관에 어느 정도 부여할지는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4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합의문 제1항과 관련해서 실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4조 1호의 가처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일 경우에 검찰이 70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수사를 못 하게 되고 이것은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실무상의 우려가 있고요.

나항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직무·권한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공수처 파견 공무원이나 특사경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가 될 문제이기도 한데요. 다목에서 지금 검사의 2차 수사권 관련해서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지금 현행 규정을 그대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두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196조 2

항의 개정안은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서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이것은 법체계상 양 법률이 부정합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유상범 위원** 일단 2항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2항? 수사검사하고……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는 게 합의문 1항에 대해서……

○**전주혜 위원** 1항에 대한 거지요.

○**유상범 위원** 1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은 합의문이 돼 있으니까 합의문의 내용에 충실하게 일단 법조문화를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지 자꾸 다른 데 가지 말고.

○**법무부차관 강성국** 지금 합의문 1항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유상범 위원** 다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전주혜 위원** 4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김남국 위원** 너무 넓게 말씀하시니까……

○**유상범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박주민**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배포된 자료 2페이지에 있는.

○**법무부차관 강성국** 2페이지입니다. 지금 2페이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2페이지에 있는 조정의견, 지금 말씀드린 것은 1호의 가와 나와 다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2항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검사, 기소검사, 공소유지검사 분리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무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충실한 공소유지에 역행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외에 또 실무에서, 대검의 입장은 참석하신 대검 기조부장의 의견을 들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일단 앞에 위치하신 세 기관장부터 말씀 듣고 대검 쪽에는 필요하면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경찰청차장 진교훈** 경찰청 차장입니다.

4조 1항 1호의 가목 같은 경우에 그전에 저희가 현재 현행 검찰청법을 가지고 대통령령에서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등’에 관한 논란이 상당

히 많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을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면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유상범 위원** 아니, 차장님! 합의문 1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소위원장 박주민** 아니, 그래서 지금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남국 위원** 지금 4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아니, 2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줘야지. 합의문 1항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한다는 2항 조항이 어찌나 거기에 의견을 달라는 거지.

○**경찰청차장 진교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페이지를 지금 보고 하다 보니까요.

○**소위원장 박주민** 페이지를 보고 하셔서 그래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합의문 1항에 대한 페이지가 같이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남국 위원** 지금 저희가 심사하는 순서를 조문대로 하는지 합의문대로 하는지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주민** 합의문대로 하는 거고요. 합의문대로 하는 거고,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합의문 1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합의문 2항과 관련된 거라서 4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래서 2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진교훈** 경찰청은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문 1항을 조문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 차장님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 이렇게 된 거고요.

○**유상범 위원** 대검 의견도 한번 들어 보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아니, 대검은 편하게…… 자동적, 매번 듣지는 않고 질문하실 때마다 필요하면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게 원칙이 맞을 것 같아서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제가 말할까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여쭙보시면 돼요.

○**유상범 위원** 대검 기초부장, 그러면 2항에 대한 대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합의문 1항이 아니고 2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합의문 1항, 2페이지에 굵은 글씨.

○**유상범 위원** 합의문 1항에 대해서.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1항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내용을 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청구는 가장 대표적인 수사 행위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검사는 영장청구권자이기 때문에 검사는 헌법상 수사권자임이 문헌상으로 명백합니다. 따라서 합의문 1항과 같이 검수완박으로 하는 방향은 위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것은 의견을 주신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시잖아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그러니까 일단 총론적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박주민** 위헌이면 하지 말아야지요. 계속 그렇게 반복하시면 의견을 들을……

○**유상범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중요 범죄 공판은 호화 변호인단과 절차의 적법성과 증거채부에 관한 법리 공방과 증인 회유, 압박 시도, 여론전 등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하는 현황입니다. 따라서 축적된 공판 경험 없이는 중요 범죄를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할 수 없고 처음부터 수사에 관여하면서 실체 파악을 하지 않으면 공판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최근 중요 범죄의 사안 자체와 수사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또 수사와 기소가 검사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사건 장악력이 저하되고 세부 사항 파악이 불가해서 신속한 공소제기도 불가능하고 공판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충실한 공소유지에 역행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말씀을 들었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서 가지고……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를 좀 해 봐야 되는 게요. 1항은 사실은 전체적인 검찰수사권의 방향을 잡은 거예요. 방향을 잡아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직접수사를 최대한 줄이고 원칙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하게 하고 그 수사를 송치받아서 그다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 보완수사도.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기본 개념입니다.

근대 형사소송법에서 원칙이 뭐냐 하면 소추와 재판의 분리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에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구조를 가진 건 영미법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고 대륙법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수사권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대체로 경찰의 수사지휘를 통해서 사건을 최종적으로 기소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데, 이 방향을 잡은 건데 이 방향을 입법화해 버린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사건들의 수사는 다 아시지만 1만 페이지, 2만 페이지 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관계자들이 많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이스피싱 사건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지금 사건이 두 겹습니까? 그런데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못 한다 그리고 공판 관여도 못 한다 그러면 지금도 법원에서 공판검사가 사건 파악이 안 돼서 수사검사가 직관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경제범죄, 부패범죄와 같이 중대한 사건에서 수사검사가 아예 관여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범죄자가 아주 우수한 변호사를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편하게 무죄 받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항은 기본적으로 제가 즉 해석하기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조문화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문화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 자체가 그리고 공소유지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문화하는 것은 좀 배제하는 게 맞지 않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소위원장 박주민** 아니, 저를 쳐다보시면서 계속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잠깐만요, 교대로 좀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도 손을 드셔 가지고.

○**최기상 위원** 합의문 1항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 수석전문위원실 조정의견대로 이렇게 조문화하는 게 합의문의 정신과 맞는 것 같습니다만.

○**유상범 위원** 최 위원님, 그러니까 합의문을 문리적으로 하시면 이렇게 조문화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법률가잖아요.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입법화하는 사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느냐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그런데 말씀대로……

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설치한 사건을 이 사람들이 송치를 할 것 아니야, 검찰에. 그것 보완수사를 할 것 아니야. 그러면 기소는 다른 사람이 해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도 똑같아요. 이 사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6대 범죄를 수사했던 말이야. 그리고 가져왔어. 가져와서 검사가 보완조사를 해. 보완조사를 하는데 조사한 검사는 기소하지 못하고 공판 관여도 못 해요. 그러면 그냥 공판검사가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지금도 많은 김앤장이란든지 대형로펌의 어마무시한 변호사들이 붙어서 싸우면 공판검사가 싸움이 되겠냐고.

○**김남국 위원**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와 기소가 함께 가야 된다는 그 전체에서 아예 기소·수사 분리를 상상 자체를 못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운영하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독점돼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 논의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합의문에 기소·수사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대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발의한 것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외주 줘 가지고 연구용역보고서 나온 것도 다 기소·수사 분리고 심지어는 지금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당선인도, 현직 검찰총장도 전부 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방향성에 동의를 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을 소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의문에 집중해서 조문화하고 성안하는 작업에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일단 박형수 위원님이 먼저 드셨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 조문에서 일단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유지에 대한 부분은 빠져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중요범죄 또는 아주 복잡한 범죄에서 공소유지를 수사검사가 하지 않으면 그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영미법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한 검사가 직접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있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꼭 대륙법계라고 해서 수사검사가 다 하고 기소하고 영미법계는 분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이나 여부에 따라서, 공소유지에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그 기능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해 버리면 아까 유상범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호화 변호인에 의한 그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 ‘유지’라는 말은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는 것 같고요.

이 논의가 나온 것이, 과연 그러면 이 조항을 넣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님 합의 장소에 저도 같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수처에 지금 수사부와 공소부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같은 공수처 내에 수사부와 공소부가 분리되어 있어서 수사부에서 수사한 사건을 공소부에 넘겨서 공소부가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면 기소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자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수사부와 기소부를 분리해서, 검찰청 내에서 수사부와 기소청을 분리해서 레드팀 비슷하게 운영을 해서 기소 여부는 수사한 검사가 관여할 수 없게 기소 여부 결정만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소유지는 당연히 수사검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유지’는 반드시 빠져야 되고.

조문 자체도 지금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수처에도 이걸 분리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공수처도 지금 수사부와 기소부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잠깐만요. 여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지요.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 법무부차관님, 저도 사실 이 조문이 조금 의문이 드는 점은 있는데요. 현실에서 공판검사와 수사검사가 사실은 형태에 따라서 관여하는 정도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엄밀하게 공판부·수사부 이렇게 직주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제가 개략적인 말씀 드리고 자세한 것은 대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 경험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사건은 수사검사가 있고 공판검사는 법정에서 따로 수사하지 않는 검사가 와서 공소유지는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사건이나 직관사건들은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도 담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나 건수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김남국 위원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 운영은 공판부가 별도로 운영이 돼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록만 가지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요한 아주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사건, 공소유지를 해야 될 어떤 중요사건은 직접수사한 검사가 들어가서 공소유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직관이라는 표현을 해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김남국 위원 혹시 기조실장님 설명 좀 더 해주시면……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지금 기소는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있고 공소유지만 공판부에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의하면, 직접수사를 한 경우에 공소유지를 공판검사가 아니라 직접수사한 검사가 하고 있는데, 직접수사한 경우에 직관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직접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조차 못 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공판 대응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국 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현실적인 검찰의 어려움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어려움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나누어서 운용하는 데의 현실적 가능성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는 검사가 있고 따로 기소하는 검사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것이, 직무를 딱 나누어서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직무 운용이 안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이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수행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직무가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그러니까 수사검사가 지금 기소를 다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다면 기소검사가 새롭게 다 기록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기록을 다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현재 그렇게 운영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수사검사의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제3자에 의해서, 인권보호관이라든지 제3의 검사가 검토는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3의 검사가 완전히 기소검사가 되어서 기소를 하는 것은 효율성을 현저하게 저해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전주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 행정처 차장님,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조항대로 하면 수사검사가 공소제기와 유지에 관여했을 때 그러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전주혜 위원**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모호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공소유지를 하다가 이게 어느 부분에 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그 공소유지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한 검사가 돼 버리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이상해서, 그래서 이게 왜 합의문에 들어갔을까 하는,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짐작을 했느냐 하면, 수사검사님은 자기가 열심히 수사를 하니까 무언가 선입관이 있을 수 있지요, 프레임 같은 게. 그래서 그 수사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했으면 다른 검사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 기소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심사를 해서 수사에 관여 안 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라 이런 취지로 저는 합의문을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기소결정 자체는 수사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그 정도로 조문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지에 필요한 직무’까지 이렇게 넣어 버리면 그러면 진짜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서 그래서 원래의 합의문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것 보면서 이 ‘유지’ 부분은 그냥 삭제하고 수사에 전혀 관여 안 한 검사가 자기가 한번 즉 검토를 해 보고 기소할 만한지 여부를 본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딱 기소하면 그것으로 이 합의문의 취지는 다 달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주혜 위원** 제가 지금 이 합의문을 이해했을 때는 저는 이 합의문 중에서 2·4·6·8항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으면 된다, 나머지는 담기가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합의문 1항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넣겠다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4조 2항에 이렇게 넣겠다고 하는 이것은 저는 합의문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사실 이러한 정도의 의미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검찰국장님, 공수처 같은 경우는 스스로도 지금 수사부와 공소부가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 식으로 이게 조문에 없더라도 법무부나 아니면 검찰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

여서 이렇게 법조문에 규정하는 것 아니라도 그렇게 운영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운영은, 그러니까 기관 운영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시라면 그 취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이 합의문 제1항은 수사권하고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개정 방향에 대한 선언으로 저도 이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법률에 별도 규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검찰청법 12조나 이하에 보면 저희들 검찰청의 구조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나 지청장 같은 기관장의 지휘·감독하에서 검사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게 개념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칙과 예외를 정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자백하는 사건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백하는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됩니까? 결국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라는 것은 수사검사가 본인의 생각에 매몰돼서 기소 여부를 제대로 판단을 못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필요한 기소랄지 잘못된 기소랄지 아니면 기소해야 될 것을 불기소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원칙적으로 이렇게 4조 2항으로 해 버리면 다툼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를 꼭 분리해야 되느냐? 사실 그러한 근본적인 의문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도 이것은 그냥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어떤 선언적 의미로 한 거지 지금 이것을 조문에 넣자고 하면 아예 명시를 했어야지요, 뭐 검찰청법에 명시를 한달지.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조 2항에 이렇게 명시를 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 저는 이것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까지 소위 위원님들 전원의 말씀을 다 들어 봤고요. 이걸 반영하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던

데 일단 이 항은 이 정도 의견을 듣는 걸로 하고, 2항으로 넘어가서 또 의견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하나만 더…… 법원에, 실무상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법원 판사들한테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질문하세요. 그것 하고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우리 차장님, 차장님 재판하실 때 아마 부패범죄수사부 형사재판 하셨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유상범 위원** 그때 그렇게 하셨지요, 중앙지법에서?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유상범 위원** 그때 재판하실 때 실제로 상대방 변호사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굉장히 좀 큰 법무법인에서 여러 명, 상당히 많은 변호사들이……

○**유상범 위원** 보통 변호인단이 구성돼 가지고 다양한 변호사들이 적게는 10여 명이고 많게는 수십 명이 와서 참여도 하고, 검찰에서는 검사들이 1명만 나오니까? 보통은 여러 명이 나오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직관사건은 여러 명이 나옵니다.

○**유상범 위원** 여러 명이 나오지요? 그 안에서 사실은 법정에서의 굉장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대체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은 어떻게 합니까? 공판검사가 지정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검사가 와서 그 사건에 대한 공판에 관여하도록 요청을 하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상의 관점이나 이런 걸 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우리 지적했지만 이건 일종의 선언적 의미이고 제일 중요한 게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이제 직접수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5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성립이 되면 사실은 모든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이제 중대범죄 수사 대상이 다 없어지고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사건을 다 수사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

면 자연스럽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얘기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현실과 우리 법제, 특히……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건은 수사검사가 기소를 해요, 형사부 사건은. 그런데 그 사건을 특정한 사건, 즉 사물관할로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가 갖고 있는 기본 권한을 단순히 사물관할로 제한할 수 있느냐? 이건 일종의 위헌성 문제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김남국 위원님, 짧게……

○김남국 위원 앞서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사건에서 호화 변호인단이 들어와서 법정에서 다투는 그런 큰 사건에 꼭 끼어 있는 변호사들이 전관입니다. 저희가 수사·기소 분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장에서, 현실에서 앞서 그런 어떤 필요성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이야기,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수사·기소가 한 몸처럼 가 가지고 전관들이 나와서 사실상 돈 받고 사건 봐 주고 범죄를 저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 불필요한 논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조문으로 가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했을 때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라고 했을 때에 앞서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해석의 모호성도 있고 또 그다음에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보조적인 어떤 무엇인가 더 필요한 행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문을 차라리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기소와 수사만 분리하게 해서 수사한 사람이 기소할 때 기소를 할지 말지 판단만 분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문을 작업하면 어떨까요, 수석전문위원님?

○유상범 위원 이게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김남국 위원 조정의견을 수석전문위원님이 만드셔서……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이 조문화 작업은 하셨지만 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김남국 위원 그러면 차장님,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하여튼 저는 합의문에 있는 것을 조문화한다면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남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의견 다 들었……

○전주혜 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력의 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피의자가 원치 않은 경우는 그냥 수사검사가 기소할 수 있게 해야지요. 모든 경우에 지금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한다? 지금 합의문에 있는 이 취지도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기소할 걸 기소하지 않는달지 아니면 기소해야 될 걸 불기소 결정한달지 그런 방어, 어떠한 제어적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게 지금 조문에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한 큰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이것은 아마 이 합의문을 만드신 두 분 원내대표님의 취지도 저는 그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문에 꼭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었는데요. 이걸 조문화하면 안 된다는 의견부터 조문화할 때는 공소의 유지 관련된 부분은 빼야 된다, 또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자백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는 빼야 된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유상범 위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조문화 2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항 제1호 단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가·나항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수사검사 기소 안 한다 할 수가 있는데 다항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 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받아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적용된 죄명으로 입건이 됐어요. 그래서 기소를 해요. 그러면 송치사건을 조사했는데 기소를 하는데 수사검사가 기소를 못 해. 이런 사건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조문에 넣으면 안 돼요.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뭐 거의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일단 합의문 2항으로 좀 넘어가서……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특히 조항 자체의 구조에서도, 직접수사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예요. 검사들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데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라고 돼 있다는 말이에요. 즉 이것은 검사들이 보완수사를 해 가지고 이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적용된 죄명을 인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건을 하는데 송치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못 한다, 이렇게 돼 버리면 형사부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기소를 못 하고 공판 관여도 못 하고 이런 아주 모순된 결과가 나와 버리니까 이건 조문화하면 안 된다. 그리고 조문화를 굳이 한다면 1항 1호에 가목 또 나목 이렇게 제한이 되어야지요.

차장님, 제 해석이 맞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다목이 들어가면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보완수사를 우리가 다 보장을 했는데 그 보완수사를 보장해 놓고 갑자기 보완수사 한 사람이 기소를 못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조문이 돼 버린다니까.

수석전문위원님은 해석에 충실하게 법을 만들었지만 이런 굉장히 모순되고 잘못된 규정이 되니까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하나 더 포인트를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2항으로 넘어가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문 2항 관련해서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굵은 글씨는 아닌데 아마 연동해서 나목 관련된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견해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회에서 의견 수렴을 잘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차관 강성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기능과 부분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인 결정 사항이고요.

다만 개정안처럼 했을 경우에 국가 범죄 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대검의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경찰청 차장님.

○경찰청차장 진교훈 저희도 입법정책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난번에 현행 검찰청법을 가지고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시적 규정이다라고 해서 논의가 상당히 확장되기도 하고 상당히 논의 과정에 진통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범위든지 정해진다면 ‘등’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아까 제 기억에는 어떤 분이 ‘경찰공무원’ 해 놓고……

○법무부차관 강성국 그건 나항에 대해서……

○소위원장 박주민 나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셔야 되거든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법무부 의견 중에 공수처 파견공무원과 특사경도 수사 범죄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 파견공무원, 특사경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경찰공무원에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식의 표현을 넣든지 고위공직자 그 부분에는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좀 넣든지 하는 추가 내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공수처 파견공무원과 특사경이 범한 범죄도……

○소위원장 박주민 나목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똑같이 의견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대검 기조부장님께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유상범 위원** 그냥 그러지 말고 또 물어봐야 되니까 의견 말하라고 그러고 질문하는 게……

○**소위원장 박주민** 그런데 잘 안 맞아요. 법무 부차관님이 나와 계신데……

○**김남국 위원** 질문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니까 원칙은 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예, 원칙 지키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이제 여당 되실 건데요.

○**유상범 위원** 자, 그러면 원칙 지킬게요.

이 법안에 대해서 일단 대검 차장님 의견을 듣고 저희 위원들 질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칙 지켰어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6대 중대범죄 중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검찰이 70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해 온 공직자범죄·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될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 비리는 2013년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이래 지난 10여 년간 국민적 관심이 쏠린 주요 사건 대부분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각종 블랙리스트 사건·월성원전 사건 등이 모두 그러합니다.

그리고 선거범죄 역시 18대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기소 사건 129건 중에서 95건, 73.6%가 검찰 직접수사 사건이었고 당선 무효형 선고 사건 36건 중 30건, 즉 83.3%가 검찰 직접수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관위 고발 사건의 56.1%가 검찰 직접수사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검찰 직접수사 사건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특히 선거범죄는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 임박 송치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과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하다가 시효가 도과되거나 부실 처리가 될 우려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공직선거법상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폐지가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법안대로라면 이번 대통령선거 공소시효 완성이 9월 9일이고요, 지방선거 시효 완성이 12월 1일입니다. 그 직전에 선거범죄의 직접수사가 폐지돼서 대혼선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형참사 사건에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을 구성해서 현재 일사불란하고 신속히 실체를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참사 사건이 제외된다면 이러한 합동수사본부 방식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개시권이 없는 검사의 합동수사본부 참여는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방위사업 관련해서는 2016년 1월 이후에 군과의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해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좀 짧게 해 주세요. 길다고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논란도 없는데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커다란 국가 수사력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위원님들 벌써부터 질의 또는 의견 진술하고 계시니까요, 의견 주실 분들 의견 좀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여기 아까 보면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방에서, 이게 검찰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한번 대검 기조부장에게 물어볼게요.

선관위 고발 인원 지금 56.1%인데 542명 중에서 304명이더라고요, 우리 방에 회신 주신 것.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예.

○**전주혜 위원** 그래서 이것을 검찰이 직접수사 했다는 통계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러면 선관위에 고발이 되는 경우는, 그러면 선관위가 고발하면 거의 한…… 어떤 경우에는 검찰로 가고 어떤 경우에는 경찰로 가는 겁니까?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선관위가 판단해서 중대한 범죄라고, 중요 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검찰에 대체로 고발하고 있고요. 다소 좀 경미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면 경찰에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선거가 지금 6대 범죄에서 빠진다고 하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선거 사건은 6개월의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예.

○전주혜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6개월의 공소시효 동안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예, 그렇습니다. 공소시효 완료일에 인접해서 내부자 고발이 이루어진다거나 고발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를 못 하고 경찰에서만 해야 된다면 부실하게 수사가 돼서 제대로 된 기소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합의 과정을 보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는 유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합의를 하다 보니까 그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은 채로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요.

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굉장히 많이 반발하는 게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특히 많은 질타를 하시는 것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가 빠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여야가 야합을 했다, 이게 결국은 국회의원 방탄법으로 됐다, 지금 이러한 질타의 소리가 많은데요. 공직자범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공직자 비리가…… 지금 그동안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비리에 해당되는 직권남용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범죄를 만약에 검찰에서 직접수사하지 못한다면 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건 중에서…… 선거 사건은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공직자 사건은 통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인지해 가지고 기소한 게 어느 정도, 1년에 한 몇 건인지 통계를 좀 내신 게 있나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예, 알겠습니다. 통계를 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의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들은 직권남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경찰청 차장님께도 한번 여쭙볼게요.

경찰청에서도 공직자범죄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고소나 고발 이외에 경찰청 내에서 또 인지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건수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저희가 고소·고발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인지한 사건이 몇 건인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전주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통계를……

○경찰청차장 진교훈 1년에 한 사천여 건 정도의 공직자 범죄, 특히 부패범죄가 아닌 공직자범죄가 한 사천여 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죄명이 주로 어떤 거예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주로 직권남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직권남용이 4000건이나 됩니까?

○유상범 위원 고소·고발이 주로 그렇게 많아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고소·고발까지 포함한 사건입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그중에 기소까지 한 예는 몇 프로 정도 돼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그것은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통계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검하고 경찰청에서 건수와 그리고 특히 경찰청은 사천여 건을 수사했다고 그러시는데 그중에 기소까지 이른 게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통계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기조부장님.

앞서 저희가 많은 언론과 국민들께 비판을 받고 있는 게 공직자범죄하고 선거범죄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직자 관련된 범죄는 저희가 조금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합의문에 따르면 부패범죄하고 경

제범죄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패범죄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뇌물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범죄도 다 포함하고 있고, 변호사법 109조부터 111조·114조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공무원과 관련된, 부패범죄 공무원을 처벌하는 데는, 수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그런데 보통 부패범죄라고 하는 것이 뇌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다른 범죄 행위도 함께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현재로서는 다 가능한 거잖아요, 수사가. 뇌물받고 뭐 지금 말씀하신 범죄는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직권남용은 지금……

○**김남국 위원** 그러니까 빠지는 것은 직권남용으로만 고발된 범죄가 수사가 안 되는, 공무원범죄에 빠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직권남용과 관련된, 직권남용으로만 고발된 범죄 기소율을 저희가 봐야지 이 합의문에서 공직자 처벌이 안 된다는 그 비판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그런데 보통 범죄라고 하는 것이 뇌물과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 뇌물만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수사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합의문에 따르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유상범 위원**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김남국 위원** 아니, 직접…… 이 합의문에 따르면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아니지, 그게 안 되는 거지.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공직자범죄 부분을 삭제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국 위원** 그것은 합의문 뒤에 가서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관련 범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차장님께 좀 여쭙보고 싶은데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중대범죄 수사와 관련되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을 경찰로 다 이관을 했을 때 중대범죄와 관련된 국가의 어떤 형벌권이나 수사력에 공백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검찰에서 주장하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경찰의 수사력을 어떻게 보면 조금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을 대표해서 말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진교훈** 그 부분은 저희로서도 어떤 부분은 좀 뼈아픈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다만 저희 경찰로서 그런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또 그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실히 그 역량을 쌓아 가면서 충분히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경찰청 차장님.

2018년 기준 범죄통계시스템(CSS) 추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찰이 중대범죄, 6대 범죄 사건을 검찰보다 12배 많이 했습니다, 12배.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 6대 범죄 중에서 선거범죄나 여러 가지 이런 관련 범죄들은 대부분 조금 발생한 범죄이고 가장 많은 게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패범죄 같은 그런 것들 보면 배임수증죄, 검찰보다 경찰이 한 27배 정도, 국고 등 손실죄는 262.6배, 범죄수익 환수 5.5배, 금융·증권범죄도 역시 56.6배, 경제범죄도 사기·횡령·배임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을 텐데요 이것도 역시 약 12배가량 많고요. 기업·경제 비리도 40.3배…… 그래서 지금 경협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통계에 배치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수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경찰에서도, 현직 국회의원 누구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2021년 4월 15일 총선 당시 후원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받은 것, 현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한 것 있고…… 또 2021년에도 있었고, 성남시 의장 뇌물 사건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사, 제가 찾아온

것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로 항상, 저희가 검찰은 수사를 잘하고 경찰은 중대범죄를 못한다는 그 전제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경찰청 차장님이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신 있게 이것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에 대한 직접수사, 중대범죄 이 여섯 가지 범죄를 이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진술을 유도하면 되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그것은 유도 신문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박형수 위원 유도 질문 금지, 이런 것 없어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경찰로서는 어떤 일이든지 맡겨진다면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도 마찬가지로 검찰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력이나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준에 가지고 있는 여러 중대범죄 수사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경찰도 지난 수십년 동안 수많은 중요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검찰과 협력해서 처리한 그러한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두 기관이 특정한 사건을 놓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경찰 역시 좀 부족한 사건들도 있고 검찰 역시 봐주기 수사 또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소·수사 분리를 통해서, 조금 권력 분권화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주민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지금 6대 범죄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건수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김남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하는 게 절대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에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통계는 대부분의 6대 범죄 사건들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중에서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들은

검찰이 그동안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서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남겨 놓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 지난번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이 법률 지금 4개를 삭제하는 걸로 조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그동안 입법 과정이나 지금 현재 그 당시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수없이 지적을 했음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본다면 처음에 6대 범죄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이 6대 범죄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못하게 하자고 했을 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방위사업 부분과 대형참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비리 사건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이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그 두 부분을 검찰이 직접 안 하기로 했었는데 그 후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까지도 검찰이 못 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의 보충 수사권까지도 모두 다 박탈하는 원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진짜 반협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적인 비난이 엄청나게 큰 것은,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공히 똑같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범죄에서 선거로 인해서 처벌받을 사람들은 다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못 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은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 이것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똑같은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범죄에 있어서도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이제는 국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을 넣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역측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직자범죄 중에서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가장 빈도도 많고 문제되는 것이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직권남용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문제인 정권 초기에 박근혜정부 때 있었던 모든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문제되는 사건들을 다 검찰에 고발할 때 그때 전가의 보도가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민

주당이 직권남용을 피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 이걸 뺐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마 그게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은 이 공직자범죄 부분을 넣어야 된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대검 차장님하고 법무부차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지금 6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박형수 위원** 이런 경우에 만약에 경찰에서 이 부분을 다 수사한다고 그러면 4개월이나 5개월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1, 2개월 남겨 놓고 검찰에 송치를 한 경우에 보완수사할 시간도 없고 그런 여력도 부족하다라면 사실은 기소 여부 자체를 경찰이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관님 그다음에 기조부장님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그것은 아까 대검 기조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범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아까 기조부장의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선거사건 공소시효 6개월이라는 것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다른 공소시효가 7년, 10년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나 짧은 기간인데 선거범죄는 그 자체도 복잡하고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발도 좀 뒤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만약 경찰에서 고발장이나 사건을 인지한 다음에 좀 지체한다고 하면 6개월 내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고발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선거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 한쪽으로 정치적인 어떤 압박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 진행 기간 중에는 수사를 자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진짜로 수사할 시간이 6개월 동안은 부족한 경우가 실무상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뭐 합의를 자꾸 파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우리 여야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똑같은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를 했더라도 이 합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뒷부분을 조금 논의를, 진행은 어차피 해 가긴 해 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좀 전향적인 태도로, 그리고 내일 아마 여야 대표단이 만나기로도 되어 있고 국회의장님도 아마 오늘 원내대표 면담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협의를 해 보라, 협상을 해 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열어 놓은 태도를 가지고 이걸 임하고 그 뒷부분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전제하에서 좀 논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래서 오늘 일단은 어차피 의결보다는 즉 심사를 하는 것 위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5페이지로 좀 넘어가도 되겠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요, 그럴 것 없이 우리가 합의된 것 중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나항에 대해서는 조문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이것은 합의하는 걸로 정리하는 게 어떻겠어요?

○**소위원장 박주민** 아니, 그래도 되긴 되는데요, 이게 워낙 또 사안이 있다 보니까.

○**유상범 위원** 나중에 할까요, 그러면?

○**소위원장 박주민** 나중에 한번에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할래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5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잠깐만……

○**김남국 위원** 저기 잠깐, 아니 앞서……

○**소위원장 박주민** 또?

○**유상범 위원** 아니, 또가 아니라 김남국 위원 또 해요? 그러면 나도 해야 돼요.

○**소위원장 박주민** 방금 박형수 위원님이 하셨어요.

○**김남국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형수……

○**유상범 위원** 아니, 여기는 최기상 위원님도 계신데 김남국 위원님 혼자 얘기해요?

○**소위원장 박주민** 최기상 위원님 원래 과묵하십니다.

○**유상범 위원** 한 말씀 하셔야지.

○**김남국 위원**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 공무원범죄 뺀 게 민주당 직권남용 범죄 빼려고 막 그랬다라고 하는 것 또 유감이다 표현하면 그러니까 좀 서운하다는 표현으로……

○**박형수 위원**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혹 안 받으려면 놓자 이런 얘기지요.

○**김남국 위원** 그래서 그런 표현은 삼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운합니다.

일단은 선거범죄와 관련되어서 이게 검찰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가 뭐 공소시효가 짧으니까 검찰이 빠르게 잘한다 이런 것 같은데 왜, 경찰청 차장님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지금 수사하고 있는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경찰이 한 4.7배 정도를 검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하는 수사가 더 어려운 사건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만약에 이런 사건을 경찰이 더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게 된다면 그때는 검찰과의 협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주요 사건을 막 이렇게 따져 보면 아마 검찰에서 중대 선거범죄 사건이나 아주 민감 사건 아마 검찰에서 조금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수사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치해서 중요 사건은 가져가서 검찰에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 선거범죄 사건을 맡겨 놓고 검찰과 경찰에게 처리해 보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지금 봤을 때 빠르게 처리하거나 정확하게 처리하거나 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만 잘한다라는 논리적 어떤 전제가 성립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검찰이 해야 된다는 그 논리를 기존에,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찰청차장 진교훈** 자꾸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을 비교해서 경찰의 수사력이 낮다든지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전제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이든지 만약에

경찰이 하게 된다면, 특히나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고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사건을 수사할 때는 검사하고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는 더 폭넓게 그리고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 기초부장님, 혹시 앞에 경찰청 차장님이 하신 말씀도 배려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예, 안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경찰과 검찰은 단순히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경쟁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검찰은 법률 전문가로서 형사소송을 해서 공소 유지를 하는 형사소송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 증거는 어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수집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알고 있고 정확히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 전문가로서 하는 수사가 있고요. 경찰은 그런 법률 전문가로서의 수사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당연히 잘하고 있고 한테 다만 우리 법률 전문가의 수사, 소추기관의 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하에서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 소추기관의 수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범죄와 같이 범리가 난해하고 또 수사가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에 법률 전문가로서 또 형사소송 전문가로서 그 사건의 수사를 맡겨 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김남국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문이 들어 가는데요. 선거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굉장히 어려운 사건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또 돈을 횡다거나 여러 가지 현금이 오가는 그런 어떤 선거범죄들이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꼭 검찰에서 직접 선거범죄를 수사하는 형태가 아니라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 전문가로서 다른 보완적인 관계로서 경찰의 수사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조언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공소를 유지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검찰로서의 역할은 불가능할까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거 범죄 중에 상당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6대 범죄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저희가 검찰에서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거든요. 그 중요한 범죄 중에 선거범죄를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범죄를 포함시켜 냈기 때문에 검찰에서, 소추기관인,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적 가능성을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김남국 위원** 건수로 보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건수여서 검찰에서 굳이 이것을 직접수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문에 대한 의견을 저도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차장님께서 처음에 모두의견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결국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 했을 때는……

○**소위원장 박주민** 경찰청 차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남국 위원** 예, 경찰청 차장님께서……

또 기관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을 ‘부패범죄, 경제범죄’로만 하고 뒤에 나머지를 삭제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만들어 주시기는 했지만 아예 이 부분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렇게만 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앞서 누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메모를 해 놔는데 경찰공무원은 말씀하신 대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조문을 넣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소속 검사와 공무원’ 여기에다가 ‘과전 공무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그것 다 넣……

○**박형수 위원**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렇게만 두자고, 가항에?

○**김남국 위원** 예, 그게 합의문의 내용……

○**박형수 위원** 그래요? 검찰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오히려 원할 거예요. 그러면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범위에 속하는 게 규정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소위원장 박주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김남국 위원** 뒤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 버리면 그것은 규정을 못 하게 되잖아요.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규정이 나오는 건데 그 뒤의 부분을 없애 버리면 그 규정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지. 이 2개만 놔두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일단은 여러……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현행 대통령령에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관련해서, 예컨대 횡령행위라든지 배임행위라든가 이게 상한이 있습니다. 금액 기준이 있는 상태여 가지고요.

○**김남국 위원** 없더라도……

○**전주혜 위원** 그런데 저는……

○**유상범 위원** 김남국 위원님, 부패범죄 경제범죄는요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부패범죄라고 하는 추상적·관념적 용어를 써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부패범죄 아닌 게 없어요. 허위공문서작성 이것도 부패범죄예요. 직권남용도 사실은 부패범죄예요. 이렇게 무한히 확장됩니다.

○**김남국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 이렇게 했을 때 ‘등’이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이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시도가 되기 때문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라고 이렇게 한정하고 아예 딱 떨어지게…… 그런데 사실 해석할 때는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께서 문구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셨잖아요?

○**소위원장 박주민** 참고로 20대 국회 때는 이것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고 해서 무한 확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냈던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였습니다.

○**김남국 위원** 아니면 ‘등’을 삭제하는 그 방법

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규정 형식은 안 맞지.

○**전주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박형수 위원** 그래서 아까 법무부차관이 얘기했는데 ‘등’을 ‘중’으로 바꾸자 그것은 일리 있는지……

○**김남국 위원** ‘등’을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전주혜 위원** 아니요, 이것은 합의문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 다 취소하고, 무효 하고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들 다시 만나서 해 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김남국 위원님처럼 하시면 아예 ‘1항 1호 가목을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바꾼다’ 이렇게 했겠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4조 1항 1호 가목 중에서 4개만 뺀다는 게 합의예요. 그것만 논의하면 되지 왜 불필요한 것까지,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 논의를 합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의견을 듣고요. 다 말씀하셨으니까……

○**유상범 위원** 나 좀 말 좀 하자니까요?

○**소위원장 박주민** 아니,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유상범 위원** 안 했어요.

○**소위원장 박주민** 아니에요? 빨리 좀 하세요.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김남국 위원님이 내 대신 열심히 해서 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청 차장님,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저도 그런데 공안검사를 안 해 봤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검찰과 협의 과정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돼야만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서 직접수사를 하고 송치받아서 보완수사하는 형태로 진행될 거다…… 지금까지 운영된 형태는 어떤 식이었습니까?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조언이나 또는 법률적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송치를 하고 나면 검사가 보완하는 수사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리적인 문제나 이게 있으면 중간 중간에 주임검사로부터 수사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서로 간에 협의하고 상의하면서 진행이 됐습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검찰에게 처음 보완수사 요청이 있게 되거나 또 송치한 후에 보완수사 요청을 받게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소시효가 정해진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사건을 진행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기소에 필요한 시간도 적기 때문에 그런 때는 경찰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검찰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더 빨리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사실은 지금까지는 영장 신청 단계, 그러니까 6개월 중에 한 5개월 남기고 경찰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청구가 될 수도 있고 청구가 안 되고 기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송치를 해 버리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필요한 사건을 더 하더라도 송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왜냐하면 공소시효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거나 이런 게 사전에 검사와 협의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단계나 가서 협의가 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

문제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경찰관들이 노력을 하지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다시 와서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사건을 송치해요. 그러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거나, 지금 현재 보완수사 요구가 원칙이잖아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와 버리면 공소시효 기간 내에 제대로 수사를 못 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지금?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런 선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감안해서 수사 진행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추가 기소에 필요한 사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감안해서 수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뭐 의도적으로 늦게 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 게 아니라 다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한 사건도 있고 어려운 사건도 있고, 검찰에서 얘기했듯이 선관위 고발 사건 중에서 56.1%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네요,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다 내려오게 되면 그만큼 또 검찰에는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을 직접 해야 되는 부담이 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적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 선거사범 수사는 담당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인원도 정해져 있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인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인원을 두 배 이상 늘려도 감당 못 할 걸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완전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관서장의 지휘에 따라서 수사인력을 조정해 가지고 보강하거나 이런 형태로는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당연히. 그것도 안 하면 책임을 방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건을?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이것은 검찰과 협의가 다른 형태로 변경돼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쭙 봤고요.

제가 지금 이 선거사범과 공직자범죄를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박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 범죄를 삭제할 때는 이 법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삭제를 우리가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범죄가 검찰에서 직접수사하는 것

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검찰에서 직접수사의 과정 속에서 어떤 폐해가 많다든가 직접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했더니 무죄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이 조항이, 이 두 가지 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직접수사로 인한 확증편향성이 문제가 있으니 직접수사를 삭제해야 된다는 설득이 가능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여야가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을 보면 그런 설득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청회를 늘 이 자리에서 부르짖었던 건데요. 그런 과정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법안이 삭제되고 나서 국민들한테 저희는 어떻게 보이냐면 여야 야합을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방탄법을 만들었다, 선거범죄를 검사가 직접수사를 못 하게 함으로써 선거범죄 검수완박이 돼서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다루기 쉬운 경찰의 조사를 받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또 공직자범죄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로부터 공직자범죄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검사에게 공직자범죄 수사권을 박탈해서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하게 하고 경찰에 영향력을 미쳐서 너희들이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지금 쇄도하고 있고 우리 모두 그 비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우리 법사위 1소위에서 법안을 만들 때 이런 국민적 비난을 뻔히 알면서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고 우리가 합의가 됐으니까, 여야 합의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법사위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형수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국민적 비난을 충분히 인식한 여야의원내대표부가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해서 재논의를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선거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냐면 만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려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선거 후 6개월의 공소시효를 둔 것은 선거로 인한 불확정한 상태를 빨리 종결하는 차원에서 6개월 공소시효를 두었는데 만일 이렇게 직접수사를 안 하고 보완수사를 통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국회의원의 공소시효를 일반범죄 공소시효로 늘려라, 이것이

오늘 한겨레의 1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검사로부터 직접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공소시효를 늘려라, 그래서 선거범죄를 저질렀던 국회의원들에 어떻게 책임을 묻게 만들 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국민의 눈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국민이 우리를 보는 모습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일방적으로 이 법안 처리를 진행하면 결국 여든 야든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완전하게 자신들만의 법을 만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호도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말씀 마치셨습니까?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주민 예.

○전주혜 위원 저는 이게 지금 1호의 가목만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위원장 박주민 나목은 뒤에 6항으로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전주혜 위원 나목은 뒤에서 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뒤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주혜 위원 그때 의견 개진하면 됩니까, 나목 관련해서?

○소위원장 박주민 예, 그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사실 지금 11시 10분입니다. 또 개회한 지 두 시간이면 보통 코로나19 때문에 정회를 해야 돼서……

합의문 3항, 이것은 법조문 형태는 아니고 부대의견 형태로 지금 전문위원님이 조정의견 주셨거든요. 이것까지만 좀 논의를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는 것으로 한다고 했더니 뒤에 계신 보좌진 분들이 막 짜려보시지? 빨리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합의문 3항 관련된 의견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이것만 하고 마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차수 변경할 것까지는 아니니까요.

어떠십니까? 이거는 지금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하자라고 전문위원님이 주셨어요. 반부패 관련된 수사 부서를 좀 감축하자는 합의문인데 이거는 3

개 정도의 반부패수사부로 남기고 그다음에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 주시지요.

이거를 제가 보기에 부처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부대의견으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유상범 위원 합의문을 부대……

○전주혜 위원 부대의견으로? 부대의견이라는 건 어디에 명시하나요?

○소위원장 박주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대의견을.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예. 부대의견이 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실 때 첨부해서 속기록에도 남고,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정부 측에나 이쪽에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회의에 보고할 때도 부대의견이 포함되어서 보고가 되고요. 정부나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과 더불어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합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하신……

○유상범 위원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유상범 위원 지금 검찰의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이런 합의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부패강력부 설치는 근거 규정이 뭐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 대통령령이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유상범 위원 그럼 대통령령에서 이걸 규정할 이유가 뭘니까, 이렇게?

○법무부차관 강성국 글썽요. 검찰청법에는 검찰청의 사무를 분장해서 부를 둘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서 검찰청에 어떠한 부를 둘 건지는 각 검사장의 지휘·감독권에 따른 재량사항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게끔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대검 부장의 의견을 좀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차관님은 대검 부장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기시네.

○법무부차관 강성국 아닙니다. 이거는 일선 저기니까요, 나오셨으니까……

○**유상범 위원** 대검 기조부장님, 자꾸 마이크를 넘기네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나오셨으니까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대통령령으로 부의 종류와 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행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재량에 따라서 직제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상범 위원** 뭐 새로운 얘기도 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법무부차관 강성국**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 해서……

○**유상범 위원** 그러면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유상범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입법부에서, 기구 설치하는 행정부의 재량행위고 행정부처가 합목적성 또 조직의 운영, 인력 구성 이런 걸 조율해서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합의문에 넣었어요. 그러면 입법부가 과연 이렇게 특정한 부서의 수를 몇 개로 해라 그리고 검사 수도 일정 수로 제한한다, 또 일정 수준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넣는 것이 옳으냐, 입법권이 갖고 있는 범위가 행정부처의 재량으로 만들어지는 기구를 그것까지 제한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그건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데 제가 질문이 조금 짧다 보니까 조금 달리 왔는데 우리 차장님께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답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답 좀 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우선 합의문 3항을 봤을 때 저는 딱 드는 의문이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래서 일정 수준이 어느 수준을 말하는 건지 그 내용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입법부의 권한 내 범위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신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률 조항이라고 하면 엄격하게 좀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부대의견이어서…… 정말 의견이지요. 의견이어서 이런 정도에 관한 정치적인 의견, 정치권의 의견 표명 정도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게 적절한 것이냐,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정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상범 위원** 지난번에 오서 가지고 호되게 고생을 하시고 나서는 뭐 어떤 대답이 굉장히 많이 바뀌셨네요. 명확한 의견 제시를 안 하시네, 이제.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법적인 그런 거였고요.

○**유상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편하게 지내시라고 한 말씀 드린 거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이게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부대의견 정도로 내는 것은 좋다고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첫째, ‘부서를 몇 개로 줄여라’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조직 구성의 권한이거든요. 의견을 줄 수 있지만, 좀 줄여라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개를 3개로 해라’ 이러면 입법부가 행정부에다가 특정하게 정해서 그걸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대의견이지만 굉장히 적절치가 않고요.

두 번째,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라’ 여기서 기준하는 일정 수준이 뭔지를 제시한 게 없어요. 20명 이하면 됩니까? 30명 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모호한 규정을 부대의견으로 둔다면 그건 사실은 의미 없는 부대의견이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다른 의견 주실 분들 있습니까?

박 위원님.

○**박형수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한테 의견 좀 묻겠습니다.

이게 부대의견인데요. 만약에 지금 부대의견에 있는 이런 문구로 이걸 법률로 만든다고 그러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박형수 위원** 법무부차관님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이게 법률로 하기에는 좀 적절치는 않고 이런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

대의견……

○박형수 위원 경찰청 차장님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법률로 하기도 부족……

○박형수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었냐면 입법부의 부대의견이라는 거는 제한적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부대의견을 달면 입법권과 행정권의 혼돈이고 그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대의견을 달 때는 앞으로 이러한 입법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런 입법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부대의견으로 달아야 되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에 부대의견을 달면 사실상 행정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섭하게 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나게 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사 총량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총량이 줄어들어서 수사 총량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부패수사부가 지금 5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범죄 건수가 지금 자꾸 줄어서 반부패수사부가 할 일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이 직제를 줄여서 5개를 3개로 줄이든지 2개로 줄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분석도 없이, 반부패수사 사건의 건수가 줄었다든지 그런 데 대한 수사 수요가 줄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통계도 없이 이것만 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부대의견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부대의견을 달더라도 이게 기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야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리고 다음에 여당이 될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은 행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기속력이 없는 것을 여기서 달아 놓는다고 해서 기속력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대의견을 다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전주혜 위원님.

○김남국 위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김남국 위원님……

○전주혜 위원 그러면 먼저 하세요.

○유상범 위원 혼자 하니까, 천천히 해요. 많이 하잖아요, 또 길게 하고.

○김남국 위원 유상범 위원님 말씀이나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말씀이나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아예 숫자까지 이렇게 명시하는 게 적절하나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부대의견을 일정 부분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 검찰의 6대 범죄를 빼놓은 직접수사 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예산이라든지 수사인력과 관련된 부서의 변동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해 예산안 심사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대의견조차 남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여야 간에 합의한 합의정신을 살려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법으로 문안을 만들어서 부대의견을 꼭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전주혜 위원님.

○유상범 위원 그러면 하나만 자료 제출……

대검 기초부장님, 우리가 수사 총량을 줄일 때는 사실은 그 부서에서 했던 범죄 총량이 줄었다고 해서 그 부서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5개의 반부패부에서 처리한 사건 현황, 작년에 처리했지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예.

○유상범 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또 다른 특수부가, 그때 각 청마다 특수부가 있었지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럼 그 2개 통계자료를 해서,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이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특수강력부에서 수사한 사건 현황 자료를 전체 통계를 내시고, 그러면 각 소속 검사 숫자가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인원별로 나중에 처리한 사건이 얼마인지 그래서 정말로 수사 총량이 줄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통계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런데 과거 통계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논하는 게 맞지 않을 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합의문에서는 향후에 4개 범죄를 줄일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미래로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가 이런데 왜 줄이라는 부대의견을 다냐?’ 이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유상범 위원** 일단 보자고요. 일단 받아서 보고……

그리고 김남국 위원님께서 지금 문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고, 어쨌거나 만일 부대의견을 낸다면 이 문구대로는 안 된다고 김남국 위원도 인정을 하셨으니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충분한 자료로 쓰자는 겁니다.

○**김남국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의견 듣고 오늘은 산회를 하고요.

아까 유상범 위원님하고 내일 또 열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따로 정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저는 수석전문위원님께 좀 여쭙보겠는데요.

이러한 부대의견이 선례가 있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제시드린 이유가 이걸로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걸로 조문화하실지, 이 내용을 구체화해서 위원님들이 합의하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구체화하실지……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기재 방식으로 부대의견이 나간 선례가 혹시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세법이나 이런 쪽은 있는데, 이게 지금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식을 조문화하실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대의견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구체화하실지 그것은 논의하셔서……

○**전주혜 위원** 저는 이게 부대의견으로 남는다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언적 의미고 엄밀히 말하면 국회가 권한이 없는 거지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이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이러한 방향에, 물론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남긴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선례가 된다……

그리고 앞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수준이 뭔지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합의문 중에서 2항, 4항, 6항, 8항 이 네 항만 법문화하면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선언적 의미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공감을 표시했다 이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법문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조직…… 검찰청을 포함해서 조직과 직무 범위가 입법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입법사항으로 할지 아니면 부대의견으로 할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겠습니다만 헌법 96조에 보면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서 정부조직법이 지금 제정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조직법 32조 3항에 보면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검이나 대검 부에 관련된 사항은 정부조직법 2조 4항에 보면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률에서 정하시는 판단을 하신다면 정하실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으로 완전히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체계로 비추어 봐서는 조금……

○**전주혜 위원** 이런 선례가 없다는……

○**유상범 위원** 어차피 이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은 수석전문위원도 다 인정하시잖아요, 내용을.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법률로 정하는 게, 각 부를 둔다고 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이…… 그게 법률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각 청마다 어떤 것을 두는가는 결국은 검찰청 내에서 정원과 규모 거기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그러한 검토도 없이 일률적으로 갑자기 3개를 줄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입법적으로도 부적절하고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넣는 것도 부적절하

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반대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오해 안 합니다. 의장께서 지시를 하셔서 가지고 중재안의 초안을 만들어 내신 것 외에는 또 합의문에 충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이 문안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오늘은 산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회의는 내일 열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개회 시간은 유상범 간사님과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 남 국	박 주 민	박 형 수	유 상 범
이 수 진	전 주 혜	최 기 상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 장 호
전 문 위 원	허 병 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 관	강 성 국	
검 찰 국 장	구 자 현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 세 민	
경 찰 청 차 장	진 교 훈	

○법원측 참석자

법 원 행 정 처 차 장	김 형 두
---------------	-------